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양식업 허가 관련 인·허가 의제 대상에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를 추가함(안 제49조제2호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병 섭)